

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

제6.1조 목적

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.

- 가.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통하여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증대하고 원활히 하는 것
- 나. 양 당사국의 표준,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, 그리고
- 다. 양 당사국 간 공동협력을 강화하는 것

제6.2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확인

양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른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.

제6.3조 적용범위

1.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 및 지방 정부기관의 모든 표준,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적용된다.
2.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이 장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

가에 정의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또는 정부기관이 그러한 기관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하여 마련한 기술 규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
제6.4조 국제표준

1. 양 당사국은 자국의 표준화기관이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의 표준의 준비, 채택 및 적용에 관한 모범관행규약을 수용하고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4.1조상의 자국의 의무를 재확인한다.
2. 이 장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상, 특히 국제표준화기구, 국제전기기술위원회, 국제통신연합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를 포함하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발표된 표준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.4에서 의미하는 관련 국제표준으로 여겨진다.¹

제6.5조 기술규정

양국의 양자 협력에서,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무역 촉진 이니셔티브를 확인하고 개발하며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
- 가. 양국의 기술규정의 질 및 수준을 향상시키고 규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, 예를 들어 정보, 경험 및 자료의 교환을 통한 규제 협력과 과학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것
- 나. 적절한 경우, 양 당사국의 기술규정,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간 동등성의 수용에 대하여 공정적으로 고려하고,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지 않는 이유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, 그리고

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이 조의 목적상, 양 당사국은 WTO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가 2000년 11월 13일에 채택한 「협정 제2조, 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표준, 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」 및 그 모든 후속 개정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양국의 양해를 확인한다.

다. 계량, 표준화, 인정 및 적합성 평가를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간 양자 협력을 증진하고 장려하는 것

제6.6조 적합성 평가절차

1. 양 당사국은 관련된 특정 분야에 따라, 다른 쪽 당사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 절차 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인정한다. 그러한 메커니즘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.

가. 적합성 평가기관 간 기존의 국제적인 다자 간 인정 협정과 약정의 인정

나. 다른 쪽 당사국의 적합성 평가기관 지정에 대한 인정을 통하여,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한 적합성 평가결과에 대한 상호 인정 증진

다.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적합성 평가기관 간 자발적 약정 장려, 그리고

라.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메커니즘

2. 각 당사국은, 적합성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, 요청에 따라, 별도의 상호 인정 협정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 및/또는 승인된 관련 적합성 평가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.

3. 양 당사국은 요청에 따라, 시험, 검사, 인증 및 인정을 포함한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다.

4. 양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용 메커니즘에 관한 양국의 정보 교환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.

5. 제6.5조 및 제6.6조와 무관하게, 양 당사국은 관련 기술규정 및 그러한 규정에

규정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인정 및 수용을 위한 메커니즘을 정의하는 별도의 분야별 협정을 협상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.

제6.7조

투명성

1.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,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.9조제3항 및 제5.6조제3항에 따라 통보되는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문서 전체 또는 요약본에 대한 온라인 링크나 사본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. 가능한 경우, 양 당사국은 통보된 문서의 전체 또는 요약본에 대한 온라인 링크나 사본을 영어로 제공한다.
2.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, 자국이 채택하였거나 채택하겠다고 제안하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.
3. 각 당사국은 안전, 보건, 환경 보호 또는 국가 안보에 관한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, 가능한 경우 언제나, 대중 및 다른 쪽 당사국이 서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자국이 제안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통보 후 최소 60일의 기간을 허용한다.
4. 한쪽 당사국은 제안된 기술규정이 공공 협의에 제출된 때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의견을 적절히 고려하고,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, 그러한 다른 쪽 당사국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공한다.
5. 각 당사국은 안전, 보건, 환경 보호 또는 국가 안보에 관한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,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에 관한 투명성 절차에서, 여전히 개정이 추가될 수 있고 의견이 고려될 수 있을 때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에 관한 협의가 대중에 공개되는 경우,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자국의 인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참여하도록 허용한다.

6. 한쪽 당사국은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을 충족하는 데 비효과적일 경우를 제외하고, 제안된 기술규정의 통보 후 의견제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접수된, 기술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 사이 기간의 연장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합리적인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한다.
7. 양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언제나, 채택된 모든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공식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.

제6.8조

공동협력

1.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각 당사국의 시장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표준,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한다. 특히, 양 당사국은 특정 사안이나 분야에 적절한 표준,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무역촉진 이니셔티브를 확인, 개발 및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.
2.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특히 다음에 관한 협력을 포함할 수 있다.
 - 가. 투명성, 우수 규제 관행의 증진, 양 당사국의 회원국 지위에 따른 각각의 국제표준과의 정합, 그리고 적합성 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의 사용과 같은 규제 문제, 그리고
 - 나. 계량, 시험, 인증 및 인정과 같은 적합성 평가의 기술 기반 향상을 목표로 한 역량 강화 활동

3. 요청에 따라,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협력 확대를 위하여 요청 당사국이 제시하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제안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.

제6.9조

정보교환

1. 이 장에 따른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한쪽 당사국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또는 설명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일반 우편을 통하여, 또는 전자우편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수용한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서면으로 전달된다. 요청받은 당사국은 그러한 각 요청에 대하여 60일 내에 응답하도록 노력한다.
2.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여기는 정보를 그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.

제6.10조 연락처

1.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을 위하여 이 장의 이행 조정을 담당하는 연락처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.
 - 가. 한국의 경우, 국가기술표준원, 그리고
 - 나. 조지아의 경우, 조지아 경제지속가능개발부
2. 각 당사국은 자국의 지정된 연락처의 관련 공무원의 이름과 전화 및 이메일을 포함한 연락 세부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.
3. 각 당사국은 자국 연락처의 모든 변경 또는 관련 공무원의 세부사항에 대한 모든 수정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한다.